

서울동부지방법원

약식명령

사 건 2018고약 [redacted] 폭행
(2018형제 [redacted])

피 고 인 [redacted] ([redacted] - [redacted])
주거 서울
등록기준지 서울

주 형 과 피고인을 벌금 [redacted] ([redacted]만)원에 처한다.
부수처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100,000(일십만)원을 1
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.

적용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, 제70조, 제69조 제2항,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
항(벌금형 선택).

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
할 수 있습니다.

2018. [redacted]. [redacted].

판사 [redacted]



[별첨첨부]

범 죄 사 실

피의자 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 폭행을 하였다.